

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대표발의 : 김석규의원)

의안 번호	7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김석규, 송은영, 정숙남  
공유신 의원(4명)

1. 개정이유

- 제5조제1항의 연구활동비 지급 재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예산 과목을 명확히 하고  
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문 정비(안 제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양산시의회 조례 제 호

##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”를 “의정운영공동경비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